



2005년도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요강

2005. 10.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임.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신구대비표

항목	2004년	2005년	비고
지원	ㅇ 1개 기관(대학교)당 2명까지	○ 1개 기관(대학교)당 3명까지	변경
제한	지원함	지원함	변경
	○ 중점연구소(이공계대학연구소	○ 중점연구소(2000년~2004년)를	
		소속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27 -27	지원 포함) 우대	가산점 부여	
선정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	ㅇ 필요시 현장실사(서면심사로	т <del>у 2)</del>
기준	사(필요시 서면심사)를 실시하	대체 가능)을 실시하여 기관이	변경
확정	여 기관이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에는 선정 취소	선정 취소	
	○ 인건비 산정·집행 기준	○ 인건비 산정·집행 기준	
	- 학부생 연 240만원 이내	- (전문)학사과정생 : 월 30만원	
	- 석사과정생 연 480만원 이내	이내 / 1인당	
	- 박사과정생 연 72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 월 60만원 이내 / 1인당	상향 조정
연구비	역사와 878 현 720현현 의대	/ 1년 8 - 박사과정생 : 월 90만원 이내	100 10
L   T		/ 1인당	
		※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 선정 당	
		시의 수당기준에 따름	
	ㅇ 여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ㅇ여비의 산정은 소속기관 여비규	변경
	을 기준으로 산정함	정을 기준으로 산정함	
	ㅇ국문표기: "이 논문은2004년도 한		
	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	
	연구되었음.(KRF-2004- 075-과		
	제번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 075- 과제번호)."	
지원기관	○영문표기 : "This work was	○영문표기 : "This work was	변경
표기	supported by Korea Research	supported by the Korea	[ 건/6
	Foundatio Grant (KRF-2004-	Research Foundation Grant	
	075-과제번호)"	funded by Korea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5-075-과제번호)"	

#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Ⅱ. 지원계획	1
1. 지원분야 및 대상	1
2. 지원예산	1
3. 지원규모 및 기간	2
4. 전문연구교수 선정자의 지위	2
Ⅲ. 공모 및 신청	3
1. 공모방법	3
2. 신청방법 및 절차	3
3.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7
Ⅳ. 심사 및 선정	9
1. 심사절차	9
2. 심사방법 및 내용	9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2
1. 연구비 지급	12
2. 연구비 관리	12
3. 연구 중 중지의 경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13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3
1.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점검	13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4
Ⅷ. 간접연구비 지원	16
Ⅷ. 행정사항	16

※ 별첨1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별첨2 : 신청양식

#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1. 사업목적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를 유도

### 2. 지원방향

- ㅇ 대학의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있는 경우 심사시 우대
- 중점연구소(2000년~2004년)를 소속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ㅇ 여성 신청자 우대 (선정 인원의 20% 내외)
- ㅇ 연구지원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매년 연차점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Ⅱ. 지원계획

#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기초학문 전 분야 (인문학, 사회과학, 순수기초과학)

나. 지원대상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소지자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 지원예산 : 5,000,000 천원

○ 신규과제 지원비 : 3,230,000 천원 이상 (107 과제 이상)

###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1인당 연간 30,000 천원

○ 연구활동비(매월 균등지급) : 24,000 천원

ㅇ 연구비 : 4,000 천원

※ 연구비 산정기준은 [붙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 연구기관지원금(간접비용 등): 2,000 천원

나. 지원기간: 3년

다. **선정과제 수** : 107 과제 이상 (신규)

※ 과제 수는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 연차 점검 및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

#### 라. 지원제한

- 1개 기관(대학교)당 3명까지 지원함
- ㅇ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전문연구인력사업을 통틀어 1인 1과제만 지원함

# 4. 전문연구인력 선정자의 지위

#### 가. 지위

- 본 지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자를 전문연구교수(Research Fellow)라 함.
- 대학은 연구교수의 사무실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3년간 지원을 원칙(연단위로 계약)으로 대학부설연구소 '전문연구교수'로 채용함.
- 연구기관은 전임 연구교수에게 도서관, 전산실, 실험실 이용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편의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나. 역할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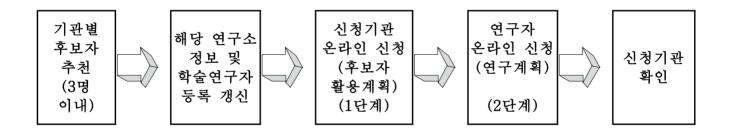
전문연구교수는 연구를 위주로 하되 강좌 개설에 관한 것은 소속기관
 의 운영 계획에 따라 활용 가능함. 단, 소속기관 강의시 1강좌를 초과하는 경우 강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타교 강의는 1강좌 이내로 제한함.

## Ⅲ. 공모 및 신청

#### 1. 공모 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 2.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05. 10. 24(월) 10:00 ~ 10. 28(금)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www.krf.or.kr에 접속하여 신청)

#### ㅇ 신청 개요

- 신청기관에서 미리 해당 연구소별 필요인원, 일정 등을 공모하여 전 문연구교수 신청자를 추천(기관(대학교)당 3명 이내, 추천 순위 부여) 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함 (1단계)
- 1단계 완료 후 신청자 개인별로 온라인 신청함 (2단계)
- <u>1,2 단계는 10. 24(월) 10:00 ~ 10. 28(금) 18:00 까지 완료</u>되어 야 함

- 2004년부터 연구지원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로 온라인신청시 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u>신청 전 계획서 작성을 완료</u>하여 야 함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교수활용계획서(양식1), 연구계 획서(양식3)에 신청기관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절 대 하여서는 안됨
- 1, 2단계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므로 <u>반드시 접수번</u> 호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사항 수정 및 파일 교체가 가능하나 <u>신</u> <u>청기간 마감 후에는 동 제반사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u>하오니 온라 인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ㅇ 온라인 신청 전

- 신청기관: 재단 홈페이지 '정보등록' → '대학부설연구소등록' 코너에서 해당 연구소 현황을 최신자료로 수정·입력하여야 함. 온라인신청 도중이나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여도 업적등이 반영되지 않음. (동 연구소 현황 자료도 심사시 활용될 수 있음)
-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전 <u>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등록」코너에</u> 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도중이나 접수번호 부여받은 후에는 정보를 수정하여도 업적 등이 반영되지 않음.

#### o 온라인 신청

#### ① 1단계 (신청기관)

- 신청기관은 전문연구교수 신청자를 추천한 후, 해당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전문연구교수 활용계획서(양식1) 파일 탑재
  -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만 탑재 가능(두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작성한 파일도 탑재 불가능)
- 전문연구교수활용계획서는 신청자 1인당 1부씩 작성하여야 함. 신청기관(대학교)과 연구소에서 연구소 성격 및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작성
  - 기관 : 공간확보, 강의배정, 임용, 규정관련, 연구비 관리, 각종 시설이용. 인력활용계획 등
  - 연구소 : 전문연구교수 필요성, 연구참여, 강의, 연구공간 등
- 온라인 신청시의 추천 순위와 총(학)장 추천서(양식2)의 추천 순위 가 동일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로그인 : 연구비 중앙관리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
- 신청기관은 1단계 종료 후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2단계 온라인 신 청토록 안내할 것

#### ② 2단계 (신청자)

- 1단계 종료 후 신청자 개인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 온라인신청시 <u>연구계획서(양식3) 파일 탑재</u>
  -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만 탑재 가능(두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작성한 파일도 탑재 불가능)
- 대표업적 선택시 200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발표된 본인의 연구업적 중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인문·사회·예 술·체육분야 연구자는 2편, 자연분야 연구자는 3편 선택하여야 하

- 며, 선택한 연구업적의 요약문(초록)을 연구계획서(양식3) 안에 기 <u>재</u>하여야 함(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업적과 연구계획서 안의 업적이 일치하여야 함)
- 분야의 특성상,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급, SSCI급,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계획서(양식3) 안에 기재하여야 함(해당 자에 한함)
- 2005년도 전문연구교수 연구비산정·집행기준표(붙임1)을 참조하여 연구비 4,000천원에 대한 예산 수립 후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단위에 주의). 온라인 입력 내용만 인정하며, 연구계획서 파일 안에 기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ㅇ 온라인 신청 내용 확인 및 신청 완료

- ① 신청기관 : 2005. 10. 30(월) 10:00 부터 11. 1(화) 18:00 까지 재 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완료 여부 및 내용 확인(공 문발송 생략). 신청기관의 확인이 없는 과제는 인정하지 않음.
- ② 신청자: 온라인 신청 2단계에서 입력한 신청내용 및 총(학)장 추천 서(양식2), 온라인 신청시 탑재한 연구계획서(양식3), 학사 및 박사 학위기(2월 학위취득 예정증명서 포함) 사본 각 1부를 <u>신청기관(연</u> 구비 담당부서)에 제출
- ③ 해당기관은 1단계에서 탑재한 연구교수활용계획서(양식1)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관하여야 함 (재단이 요구할 경우 별도 제출)

#### 다. 신청 자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한국학중앙연구원 포함)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로 소속대학 총(학)장이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자. 단, 현재(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취업 중인 자는 선정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하여야 함 (선정 후 관련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200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 2편 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3편 이상인 연구자
-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 으로 산정함
- ※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A4용지 1-2매 분량)를 신청시 온라인 입력하여야 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일정기간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협약 당시 자격기준을 연구 종료시까지 인정함 (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
- '06년도 사업부터 신청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준은 '05년 말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임

#### 3.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ㅇ 학사 학위 취득대학에서 전문연구교수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전문연구인력사업을 통틀어 기 수혜 실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보고서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2005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및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의 강의파견,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박사후해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전문연구교수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1과제에 해당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5.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기 수행중인 과제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 지원 사업(전문연구인력지원) 연구비에서 지원함.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과 과학기술부 이관사업 중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우수여성과학자도 약지원연구,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 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

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 제외)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 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Ⅳ.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단 계 별	심 사 내 용				
1 단계	요건심사	- 신청자격 여부 등			
		- 연구업적의 우수성			
2 단계	전공심사	- 대학의 연구인력 활용계획서			
		- 연구계획서			
3 단계	종합심사	- 예산배정 및 지원자 선정			

####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심사 : 요건심사

1) 심사방법 :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2)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 여부 등

나. 제 2 단계 심사 : 전공심사

1) 심사방법 : 온라인 패널 심사

2) 심사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내용 심사

### 3) 심사항목 및 배점

# 【적격심사】

심 사 내 용	적격	부적격	지적내용
연구업적이 신청요강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			

# 【기관의 연구인력 활용계획서 심사】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 사 내 용
기관활용	대학의	활용계획서의 구체성	○전문연구교수 지원에 대한 연구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과 추천순위 등
계획서 평가	육성의지	지원 필요성	○전문연구교수 지원의 필요성이 적절한가

- ※ 강의 및 연구소 내 과제 참여 계획 등을 활용계획서에 명기
- ※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심사】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 사 내 용
		주제의	ㅇ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창의성 및	○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도 독자성	이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독창성	방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내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창의성 및	이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
		독자성	이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연구주제		학문적 가치	○기존의 역근들 들전시기는가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및 학문의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학문발전	균형발전	○소외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학문적	ㅇ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공헌도	파급효과 및	o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교육과의 연관성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결과가 교육 내용으로 중요성이 높은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는가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연구내용의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필요 충분성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지크보선(사람, 또는 사료제신) 및 건크센션 방법으
			ㅇ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연구내용		   실행계획의	○자료수집 대상, 도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
		적절성	는가 - 기교보서 미 경과웨서의 이철 기교이 되고 보서 드그
및		1 6 0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 분석 도구
실현가능성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거케어구이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선행연구의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선행연구		이인용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참고문헌)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역량	연구능력 및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
		연구실적	는가
		다 1 큰 기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1. 인문, 사회, 자연 등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측정지표 및 심사내용은 취사선택 또는 변경 추가가 가능함.
  - 2. 선행연구와 연구역량 항목은 배점범위 내에서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4) 과제별 평가 점수 산출 : 표준점수제에 의한 극단점수 배제 후 산술 평균

다. 제 3 단계 심사 : 종합심사

- 1) 예산배정 : 기본배정 10%, 추세 변동 40%, 당해연도 신청 40%, 정책적 고려 10%
- 2) 선정기준 확정
  - ※ 필요시 현장실사(서면심사로 대체 가능)를 실시하여 기관이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단,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선정 확정 후 지급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점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다.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 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3. 연구 중 중지의 경우 연구결과물 제출 책무

- 연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 학술지 게재논문(저서포함) 1편
- ㅇ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 학술지 게재논문(저서포함) 2편을 제출하여야 함.
  - ※ 기타의 경우 해당년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Ⅵ.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점검

가. 제출대상 : 다년과제(단년과제 제외)

나. 제출시기 : 연차별 당해연도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2차 연차보고 시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1편을 제출하여야 함. 학술지 게재논문 미제출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며 지원중단 시까지 수행 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라.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재단 소정양식)

#### 마. 연차점검 방법

- 1) 연차점검 내용 : 기 수행 연구실적 및 향후 연구계획
- ㅇ 기 수행 연구실적
  -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실적
  -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 ㅇ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 차기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2) 점검방법: 연차보고서 점검

바. 점검결과 : 계속지원 여부 검토

###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가. 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3) 제출자료
- 가)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집행 정산내역 포함)
- 나) 연구결과보고서 (재단 소정 양식)
- 다) 연구요약문(국・영문)
  -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는 물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 나.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1)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에 대한 책무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3편(연차보고 결과물 1편 포함) 이상(저서, 특허 포함) 게재하거나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전 학문 분야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 국제적 수준(A&HCI급, SSCI급, SCI급, SCIE급) 학술지
- 전문학술저서
- 2) 연구결과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3) 연구결과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 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KRF-2005-075-○○○○○)."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 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HRD, B asic Research Promotion Fund)(KRF-2005-075-○○○○○○○)."
- 4) 연구결과발표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학술저서로 출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게재 사유서를 제출
    - 미게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D 등급과 동일 적용
    - 미게재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재단의 소정 평가 절차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과된 과제는 가능한 학술지에 게재를 권장하며, C, D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 기간 (C급 3년, D급 5년) 제한

#### 다. 연구결과 사후관리

- ㅇ 연구결과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작성 및 제공

####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 Ⅶ. 간접연구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

# Ⅷ. 행정사항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을 할 수가 없 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초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온라인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문의처(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 한국학술진흥재단

● 사업내용 문의 : 인력양성부 인력양성팀

Tel) 02-3460-5646, Fax)02-3460-5630

● 전산입력 문의 : 학술정보담당관실

Tel) 02-3460-5544,5547 Fax)02-3460-5540

# (붙임1)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 4,000천원 이내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 연구참여 수당 - 연구보조원 수당(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 학사·석사·박사과정(생)	-(전문)학사과정생 : 월 3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 월 6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 월 90만원 이내 / 1인당 * 단, 계속과제의 경우는 과제 선정당시의 기준에 따름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 및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자 제외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인정안함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 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 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② 연구 활동 경비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수집 등으로 최소액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70 71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 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포함)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 문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재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 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 에 필요한 경비				
③ 직접성 경비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 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 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 포함)와 부수기자재 (개인용 PC 및 프린터의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루또 #거 등 병사하여 계상되 끝에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 (특허출원비)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지원과제에 한함)			

- ※ 여비의 산정은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종료 후 활용 계획서 제출
- ※ 본 사업에서 연구활동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없음

#### (붙임2)

<양식 1>

# 2005년도 전문연구교수 활용계획서

- 해당 기관에서 전문연구교수 후보 1인당 1부씩 작성
- 신청요강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분량은 자유롭게 기술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기관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절대 하여 서는 안됨

#### 1. 연구교수제 운영의 필요성

- 가. 전문연구교수의 인력 필요성 등
  - 연구소 강의 및 연구와 연계한 전문연구교수의 필요성

#### 2. 전문연구교수 활용계획 (2005년 ~ 2008년)

- 가.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연구소의 공동연구 참여 등 설명)
- 나. 기타 운영방안
  - ※ 각 항목은 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전문연구교수 처우계획

- 가. 동 전문연구교수의 임용 및 처우에 대한 계획
  - ※ "처우"는 재단의 지원비 외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의미합니다.

## 4. 2008년 이후 자체 재원에 의한 채용 및 운영계획

※ 대학에서 전문연구교수제 정착을 위한 계획(전문연구교수 운용을 통한 연구소 육성방안, 전문연구교수 임용을 위한 자체 재원 충당 방안 등 포함)을 기술하 십시오.

#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전문연구교수 총(학)장 추천서

신 청 자	국문)	주민등록번호	
	영문)	수인증속인모	_
연 구 과 제 명			
연구소명		연구소장	
추천의견 :			
		연구소장 :	(서명)

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귀재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연구교수 지원사업의 신청자 (명)중(<u>순위</u>)로 추천하며,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할 때까지 소속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05. . .

기관(대학)명:

기관장: (직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 2005년도 전문연구교수 연구계획서

어그 그 게 대	국문	
연구과제명	영문	

# ≪ 목 차 ≫

Ι.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П.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Ш.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V.	참고문헌
VI.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VII.	대표연구업적 요약문
₩.	소명서(해당자)

- 신청요강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항목별 2~4매씩 총 10매~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계획의 기술이 필요한 항목은 연차별로 작성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기관 및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절대 기재 하여서는 안됨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 및 독창성,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균형발전, 학문적 파급효과 및 교육과의 연관성 등)

# 2. 연구의 내용, 방법, 범위

(연구 내용의 필요 충분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적적성 등) ※ 연차별 연구할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요망

### 3. 연구과제의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학문적 가치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배경 등)

###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논문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과제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및 교육에의 활용정도 등)

# 5. 참고문헌

(선행연구 등과 연계한 참고문헌 등)

# 《 박사학위 논문 요약문 》

박사학위	국 문			
논문제목	영 문			
학위취득	일	년	월	일

※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1~2페이지 내로 작성

# 《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

- ※ 발표 논문의 초록을 입력하되, 초록이 없을 경우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특허의 경우, 출 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 기재
- ※ 인문·사회·예술·체육 분야의 경우 2편, 자연분야의 경우 3편 작성 (단독 저·역서는 연구실적 2편, 공동 저·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는 대표업적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업적형태 구분	저서(	) 9	격서(	) 학숙	술지(	)	외국특	허(	)
발표년월일	년	월	일	참여구분	단독 <b>※</b> 공동	·( 일	) / 공 경우 (	동( )인	) 참여
게재지 (발행처)									
국문제목									

# ■ 초록 또는 요약문

# 《소명서》

#### ※ 해당자만 작성

학문분야의 특성상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A&HCI급·SSCI급·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역량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시 참 고할 만한 소명서를 A4용지 1-2매로 작성

# 전문연구인력지원 FAQ

- 1. 금년도 동 사업이 기존과 비교할 때 달라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 ▶ 지원제한과 관련, 기관(대학교)당 2명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3명 이내로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2. 동 사업은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과 유사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동 사업과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연구교수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근본 목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기초학문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순수기초과학>을, 학술연구교 수지원사업은 <전 학문분야>를 각각 지원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 또 동 사업과 학술연구교수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재단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연구책임자 자격으로 두 과제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 현재 취업 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
- ▶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퇴직하여야 합니다.
- 4. 1, 2차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입니다.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인건비를 받는 자격으로 1, 2차 사업에 선정된 자는 동 사업 선정시 자동 제외됩니다.

(인건비를 받지 않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1, 2차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5. 한 대학교에서 캠퍼스별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캠퍼스(예 : 한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전캠퍼스 등)는 별도의 대학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6. 학위논문은 연구업적 산정시 인정됩니까 ?
- ▶ 아니오. 인정되지 않습니다.